

의안번호	2210344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5. 7. 21.
추 계 번호	25B2728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000만원(연평균 3,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23조의3)	160	—	—	—	—	160	32

주: 1.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3 (국가먹거리종합 계획의 수립)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2. 식생활 교육 3. 먹거리 안전성 확보 4. 먹거리 접근권 확대 5.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충 6.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체계 확립 7.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먹거리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국가는 국가먹거리종합계획에 따른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3 (국가먹거리종합 계획의 수립)	제1항 및 제2항 -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	• 유사사례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제3항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국가먹거리종합계획에 따른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문단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자문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식생활 교육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 1개 지방자치단체당 1억원이 소요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인 5,000만원을 지원해 왔음(2023년까지 지원 후 종료)

※ [참고자료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개요

[참고자료 2]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현황 참고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개정안에 따라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000만원(연평균 3,200만원)으로 추계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²⁾ 수립시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6,000만원 편성
 - 개정안에 따른 국가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 기간 중 첫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내 먹거리계획 수립 관련 유사사례

(단위: 백만원)

유사사례	수립비용	비고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60	• 5년 단위 법정계획
지역먹거리계획 (시·군·구 단위)	100	• 시·군·구 단위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 국비 50% 지원 - 2023년 기준, 20개 지자체에 총 10억원 지원 - 2024년부터 사업예산 미편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표 3] 국가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먹거리종합계획 수립	160	-	-	-	-	160	32

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수행 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확산
- (사업내용)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확산동력 마련
 - (지자체 계획수립)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별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공급모델 개발, 실증연구 등 연구용역비 지원('23년 종료)
 - (확산기반조성) 교육·홍보, 사회적가치 확산, 식재료규격 표준화 등
 - － (교육·홍보) 다양한 주체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상호교류 확대('23년 종료)
 - － (사회적 가치 확산촉진)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의 다양한 지역먹거리계획 실천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확산지원('23년 종료),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안전·영양·복지·환경 등)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자·생산자·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직거래 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직거래 가치를 전파해 농산물 직거래 참여 활성화 유도
 - (푸드플랜운영) 공공기관 급식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안정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조직화 지원('23년 종료)
 - (공공급식통합플랫폼구축) 공공급식 수요·공급자간 거래시스템, 행정조직의 관리시스템, 대국민 정보서비스 등 기능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외식업체의 지역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국내 농업과의 동반성장 추진('23년 종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생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 안전, 물류, 배송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예산현황
 - 사업명: 농식품소비기반조성(세부사업)-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내역사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예산: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 지자체 계획 수립	• 1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 × 20개 지역	1,000	1,000	1,000	—	—
■ 확산기반 조성	소계	1400	2,150	2,150	450	450
	• 교육·홍보	400	800	900	—	—
	• 사회적 가치 확산 촉진	700	850	750	250	250
	• 식재료 규격 표준화	300	—	—	—	—
	• 직거래 종합정보		500	500	200	200
■ 푸드플랜 운영	소계	2,650	300	300	—	—
	• 안전·품질 관리	2,500	— (지방이양)	— (지방이양)	— (지방이양)	— (지방이양)
	• 기획생산체계 구축	150	300	300	—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센터 1개소당 6,000백만원 (국비 40%, 2,400백만원) — 지자체 자본보조(2년 사업) — 1년차: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300 강원 화천	2,400 강원 화천 경기 안성	2,400 경기 안성 전북 전주	2,400 전북 전주 경북 의성

[참고자료 2]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현황

구분		지자체	
		기초	광역
‘18년	9개 지자체	서울(서대문구), 대전(유성구), 청양, 해남, 완주, 나주, 춘천, 상주	충남
‘19년	24개 지자체	수원, 용인, 이천, 평택, 포천-연천, 괴산, 서산, 부여, 익산, 김제, 부안, 담양, 순천, 장성, 구미, 안동, 거창, 김해, 진주, 대전 대덕구	부산, 전남, 제주
‘20년	18개 지자체	홍천, 금산, 예산, 남원, 광양, 영암, 김천, 영주, 칠곡, 거제, 통영, 광주(광산구)	강원, 경북, 울산, 인천, 전북, 충북
‘21년	21개 지자체	강릉, 원주, 남양주, 함양, 양산, 합천, 의성, 영천, 포항, 여수, 무안, 임실, 정읍, 천안, 논산, 태안, 청주, 제천, 영동, 증평, 전주	
‘22년	15개 지자체	서울(은평구), 화성, 양구, 보은, 진천, 옥천, 서천, 진안, 신안, 함평, 경산, 성주	세종, 광주, 대구
‘23년	17개 지자체	동구, 용인, 광명, 고성, 철원, 단양, 아산, 진도, 장흥, 고흥, 경주, 문경, 영양, 봉화, 군위, 청도, 고성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완료 지자체 현황 (’24년 기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16개소	135개소
서울(’21)	●서울1 [서대문 ² (’23)]
부산(’21)	●광주1 [광산(’22)]
인천(’24)	●대전2 [유성 ² (’24), 대덕(’21)]
광주(’24)	●경기29 [수원(’23), 성남(’24), 의정부(’23), 안양(’23), 부천(’23), 광명(’24), 평택(’21), 동두천(’23), 안산(’24), 고양(’23), 구리(’23), 남양주(’23), 오산(’23), 시흥(’20), 군포(’23), 의왕(’23), 하남(’23), 용인(’24), 파주(’23), 이천(’21), 안성(’22), 김포(’23), 화성 ² (’23), 광주(’23), 양주(’23), 포천(’23), 여주(’22), 연천(’21), 가평(’21)]
울산(’21)	●강원17 [춘천(’24), 원주(’24), 강릉(’24), 동해(’23), 태백(’23), 속초(’23), 삼척(’24), 홍천(’23), 횡성(’23), 영월(’24), 평창(’23), 정선(’24), 철원(’23), 양구(’23), 인제(’23), 고성(’23), 양양(’24)]
세종(’23)	●충북9 [청주(’22), 충주(’20), 제천(’23), 보은(’24), 옥천(’23), 영동(’22), 증평(’22), 진천(’23), 괴산(’21)]
경기(’24)	●충남15 [천안(’22), 공주(’20), 보령(’23), 아산(’19), 서산(’20), 논산(’23), 계룡(’23), 당진(’21), 금산(’23), 부여(’21), 서천(’23), 청양(’23), 홍성(’23), 예산(’21), 태안(’21)]
강원(’23)	●전북12 [전주 ² (’22), 군산(’18), 익산(’20), 정읍(’24), 김제(’20), 완주(’24) ² , 진안(’23), 무주(’21), 장수(’23), 임실(’23), 고창(’20), 부안(’20)]
충북(’21)	●전남15 [목포(’24), 여수(’22), 순천(’23), 나주 ² (’24), 광양(’23), 담양(’23), 곡성(’24), 구례(’24), 고흥(’24), 화순(’24), 해남(’20), 영암(’23), 함평(’22), 장성(’24), 신안(’23)]
충남(’19)	●경북21 [포항(’24), 경주(’23), 김천(’23), 안동(’22), 구미(’20), 영주(’23), 영천(’23), 상주(’23), 문경(’24), 경산(’23), 의성(’22), 청송(’23), 영양(’24), 영덕(’24), 청도(’24), 고령(’24), 성주(’24), 칠곡(’23), 예천(’23), 봉화(’24), 울진(’20)]
전북(’24)	●경남13 [창원(’21), 진주(’20), 통영(’21), 김해(’20), 밀양(’20), 거제(’22), 의령(’21), 남해(’20), 하동(’21), 산청(’22), 함양(’24), 거창(’20), 합천(’22)]
전남(’19)	
경북(’23)	
경남(’19)	
제주(’21)	

주: 지자체명에 2가 표시된 서대문², 유성² 등은 지역먹거리계획 2기 수립 지자체임